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4. 1 화 순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6. 4. 3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설 명 자 :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

나. 제 안 이 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(제156조)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 관리자 명칭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체육업무 담당실과 변경으로 관련규정 개정

다. 주 요 내 용

- 기금관리 공무원의 변경

기금출납명령관	→	기금운용관
기금출납공무원	→	기금출납원

-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위원회 구성위원 변경
 - 위원구성 : 새마을과장 → 문화공보실장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(제156조)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관리자 명칭 및 행정 기구 개편에 따라 체육업무 담당실과 변경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 안 가 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일부를 개정하여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(제8조)
기금출납명령관 →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공무원 → 기금출납원으로 변경
- 구성위원 변경 (제11조)
새마을과장 → 문화공보실장

3. 관계법령

-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(화순군조례 제1396호)
-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 (화순군규칙 제825호)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, 동조 제2항중 "기금출납명령관"을 "기금운용관"으로 하고,
"기금출납공무원"을 "기금출납원"으로 한다.

제11조 제3항중 "새마을과장"을 "문화공보실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8조 (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)</p> <p>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<u>기금출납명령관</u>은 <u>군체육 담당과장</u>으로 하고, <u>기금출납공무원</u>은 <u>군체육계장</u>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 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<u>군의회의원 2인</u>, <u>새마을과장</u>, <u>체육회 사무국장</u> 및 <u>체육회 부회장중 1인</u>, <u>체육단체 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</u>, <u>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</u>를 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	<p>제8조 (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)</p> <p>① - - - - - 기금 - - - - -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- - .</p> <p>② - - - 기금운용관 - - - - - - - - - - 기금출납원 - - - - - .</p> <p>제11조 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- - - - - 문화공보 실장, - - - - - - - -, - - - - - - - -,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</p>